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8. 7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.

2. 개정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
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등을 식품진흥기금 재원
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달성군식품진흥기금 제작로 수
납·관리하고자 함.
-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·조정함으로써
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근거법령

- 식품위생법 제71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

4. 개정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재원 추가

-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재원 추가함.

나.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

- 식품진흥기금 위원구성을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고 군의회 의원을 추가하고,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.

다. 기금운용관 변경

-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근거하여(행정안전부예규 제201호) 기금운용관을 '주민생활지원국장'에서 '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'으로 변경

라. 위원회의 기능 추가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심의 내용 중 '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'을 추가함.

5. 개정조례안 : 불임

6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7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 제71조,
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08. 8. 5. ~ 2008. 8. 26.(특이사항없음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5.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
제4조 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5인이내”를 “7인이내”로 한다.

제5조 제4항 제1호 중 “업무담당과장”을 “군의회 의원”으로 한다

제5조 제4항 제2호 중 “학식과”를 “경험과”로 한다

제5조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식품위생업무담당 국장·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제1호 중 “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”을 “기금의 운용
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

제6조 제1항 제2호 중 “기금결산에 관한 사항”을 “기금운용 성과분석에
관한 사항”으로 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기금의 조성) 1 ~ 3 (생략) 4 ~ 5 <신 설></p>	<p>제2조 (기금의 조성) 1 ~ 3 (현행과 같음) 4.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5.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</p>
<p>제4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 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,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4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_____ 식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_____ 식 식품위생업무담당 _____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7인 이내 _____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(생략) 1. 업무담당과장 2. 식품위생에 관한 <u>학식</u>과 전문성을 가진 자 3. (생략) 4. (생략) 5. <신설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생략) 1.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.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 1. <u>군의회 의원</u> 2. 식품위생에 관한 <u>경험</u>과 전문성을 가진 자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식품위생업무담당 국장·과장은 당연</u> <u>직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1. <u>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u> 2. <u>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</u> 3. (현행과 동일)</p>